

2021년 2월 11일 발행인·편집인 : 이용섭·김이강 발행처 : (우)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(치평동) 전화 (062) 613-6343 팩스 (062)613-2129

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-7호

「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「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11일
광주광역시장

1. 제정 이유

- 「경찰법」이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,
-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-2조)
- 나. 중복감사의 방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위원 임명방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-5조)
- 라.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-9조)
- 마.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-12조)
- 바. 예산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- 사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. 2. 26.(금)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일반우편 또는 팩스

- 전자우편 : cmjoption@korea.kr
- 일반우편 :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, 광주광역시청 2층 자치행정과
- 팩스(fax) : 062-613-2949

4. 기타사항

- 가. 제정안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(<http://www.gwangju.go.kr>) ‘시정소식·고시공고/입법예고’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나.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(☎ 062-613-14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안전·교통·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 및 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 수 있다.

제3조(중복감사의 방지)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·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(이하 “위원회규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제4조(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) ① 광주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(이하 이 조에서 “추천권자”라 한다)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,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.

제6조(의안의 발의 및 상정) ① 위원은 제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.

제7조(위원의 수당)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.

1. 참석수당: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·의결·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2. 심사수당: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3.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

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, 식비(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),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의 여비)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지급 절차 등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실무협의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,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

제11조(간사)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의 구성, 회의 개최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3조(예산)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에서 시장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4조(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「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,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장의 의회 출석·답변) 위원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생활안전, 교통,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
(제2조제1항 관련)

가.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범위 기준	구체적 사항 및 범위
D) 생활안전을 위한 순	가)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	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(CPTED) 사업 추진

찰 및 시설의 운영	시설 설치·운영	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
	나)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	① 지역·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·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(CPO) 운영
2)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	가)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·운영	① 시기별·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·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(지역안전순찰 등) 제도 시행 ③ 은행·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
	나)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·관리	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·범죄예방교실·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(합동순찰 등)
3)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시 긴급구조지원	가)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	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·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
	나)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	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
	다)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	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
4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·학교·성폭력 등의 예방	가)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·호환 활동	①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활동(교육·홍보 등) ②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안 대응(시설 내 학대 점검, 가·피해자 조사 등) ③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·지원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(APO) 운영
	나)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·대응 활동	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·유괴 경보 체계 구축·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·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
	다)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	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·배치·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·교육·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

라)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·보호 활동	① 청소년 비행방지, 선도·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(가·피해학생, 학교·가정 밖 청소년 등) 면담·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(거리상담 등)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법 선도제도 운영(선도프로그램, 선도심사위원회, 전문가참여제, 우범소년 송치)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(정책자문단 등)
마)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	① 가정폭력 예방활동(교육·홍보 등) ② 가정폭력 (긴급)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·보호기관 등 연계·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(협업회의의 참석, 가·피해자 조사 등)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(APO) 운영
바) 학교폭력의 근절·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	① 학교폭력 예방활동(교육·홍보 등)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(학폭위 참석, 117사안대응, 가·피해학생 조사 등)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,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(SPO) 운영
사)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	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(교육·홍보 등)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
아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 예방 업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·청소년·노인·여성·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·학교폭력·성폭력 등 예방 업무
5)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(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)	가)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·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(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)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)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·성매매 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·단속 ① 풍속영업의 지도·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·단속 다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·단속 업무

6)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	가)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 다) 처리	① 가정폭력, 학교폭력, 아동학대,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, 기타경범,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, 보호조치,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
나) 지하철,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	지하철, 내수면 등	① 지하철경찰대 설치·운영(수사 제외)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·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·운영
다) 유실물 보관·환·매각·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	유실물 보관·환·매각·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	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·감독 ② 습득물·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·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
라)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	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	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·흉기 임시영치 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
마)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	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

나.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1)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·단속	가) 교통법규 위반 지도·단속, 공익신고 처리 등 나)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·관리·운영 등	① 음주·부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(영상단속, 방문 신고 등) ④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·보급 ⑤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·교정 ⑥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
2) 교통안전	가) 교통사고 예방, 교통소통을 위한 무단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·운영 나)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	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·관리·운영 ③ 교통안전표시 설치·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·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·

	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	결정
	다)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·설치·관리·운영	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·관리·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
3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	가)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·시행 ② 교안,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·배포
	나)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	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·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·보급
4)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	가)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·관리	① 모범운전자회·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·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
	나)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	① 부사고 운전자 선발·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·안내
5) 통행 허가,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,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	가)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,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	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·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·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·허가증 발급
	나) 도로공사 신고 접수, 현장점검 및 지도·감독 등	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
	다)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·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	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·제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제합동 점검
	라)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·관리	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·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·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
	마)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	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·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·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
	바) 주·정차 위반차량 전인대행법인등 지정	① 전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·지정증 발급 ② 전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·정지 및 지정증 회수

6)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	가)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(일반신고를 포함한다) 처리	① 교통사고, 사망·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,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
	나)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	① 운전면허 발급·재발급·갱신 신청·접수·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·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
	다)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	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(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)
	라)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	① 출·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·재해·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
	마)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	① 시기별·취약 대상·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·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·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
	바)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의 등	① 지역 교통영향평가,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「도로법」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(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) ③ 「교통안전법」상 안전진단,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

다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

자치경찰사무	사무의 범위 기준	구체적 내용
-	가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 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	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
-	나.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	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

비고: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.

수당의 지급기준(제7조제1항 관련)

1. 참석수당

구분	단위	기준 단가	비고
위원회	일당	· 기본료 : 100,000원 · 초과 : 50,000원	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만 지급한다.

2.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: 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전 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가능